#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76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황정아·조인철·노종면

황명선 • 주철현 • 김 현

모경종 • 이용우 • 조계원

허성무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이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거사다리 복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생 략)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	②
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	
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	
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	
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	
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	
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	
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	
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u>20</u>	<u>202</u> 9년 <u>1</u>
<u>24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u> 2월 31일</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